[별지 제26호의4서식]<개정 1994.11.19, 1995.3.2, 1997.3.17>

(앞 면)

자동차대여사업변경등록신청서				처리기간 7일
신청인	①대 표 자 성 명		②주민등록번호	
	③법 인 명			
	④주 소	(전화번호 :)		
⑤변경사항	변 경 전		변 경 후	
⑥변경사유				

자동차운수사업 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건설교통부장관
특 별 시 장
광역시장
도 지 사
귀하

구비서류	수 수 료
1. 신 · 구사업계획을 대조한 서류 1부	증차 : 5,000원
2.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	차량 1대당 2,000원 추가
가. 출고예정증명서 또는 자동차매매계약서등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	기타 : 2,000원
나. 차고를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수용능력을 기재한 서류 각 1부	

33331-11211 민 182㎜×257㎜

'94.9.9. 승인 (신문용지 54g/㎡)

※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: 생략